

서울특별시 조례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1033호

나. 발 의 자 : 남창진 의원(찬성자 53명)

다. 발의일자 : 2023년 8월 14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8월 21일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다수의 조례에서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로 “심신장애” 를 들고 있는바, 단순히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해촉 사유로 규정하여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장기간의 심신쇠약” 으로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심신장애” 라는 표현을 “장기간의 심신쇠약” 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5조)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가. 조례안의 개요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사용되는 “심신장애” 라는 용어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장기간의 심신쇠약” 으로 일괄 정비하고자 발의됨.

나. 용어의 정의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심신장애(心神障礙)” 는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불완전한 상태로 정의하고 있고, 「형법」에서는 “심신장애” 를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으로 구분하면서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심신미약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다. 일괄정비의 타당성 여부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조례 중 “심신장애” 라는 용어를 “장기간의 심신쇠약” 으로 정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의 조례를 일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차별금지)는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의 경우에도 기존의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라는 조문이 “장기간의 심신쇠약” 으로 개정(2016. 2. 3.)되기도 하였음.
- 또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자치법규 인권 관련 실태조사’ (2017)에서 서울시 자치법규를 전수조사하여 조례의 규정상 ‘장애를 이유로 한 위원 위촉 해제 사유’ 라는 용어를 포함해 장애인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모든 서울특별시 조례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 (2018. 10. 31).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도 지난 제286회 임시회(2019. 4.) 및 제287회 정례회(2019. 6.)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심신장애” 를 “장기간의

심신쇠약” 으로 변경한 바 있음.

- 따라서 동 조례안은 앞선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례에 남아 있는 “심신장애” 라는 표현을 일괄정비함으로써 시민의 인권과 권익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됨.

담당 조사관	연락처
김소연	02-2180-8065